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13시 25분

목차

목차 2
완료된 입법예고 3
「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입법 예고 3

「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입법 예고

2023.01.06 00:00 등록자 김동승 061-659-3971 해양항만레저과 공고(입법예고)

「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6. ~ 2023. 1. 25(20일간)
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3. 1. 27.(금)까지

다. 예 고 방 법 : 시보, 시홈페이지 게재

라. 의견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이메일, 팩스

마. 문의/기타사항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1/공고문 참고

붙임 : 입법예고문(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) 1부

첨부파일	조례 입법예고.hwp 미리보기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